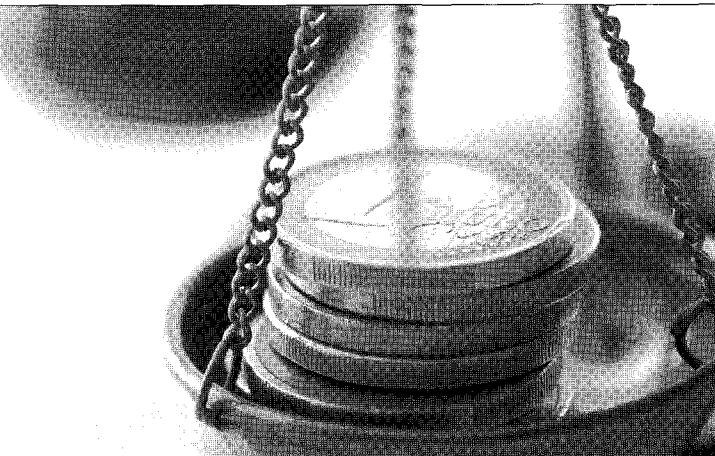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개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얼른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하게 신고해왔고 달리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세무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며 심적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1.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납세자권리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을 개시하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때 함께 받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납세자권리현장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권리현장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에 사전통지와 조사완료후에 결과통지를 받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연기를 신

청하고 결과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세무조사시에 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무조사는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정기조사가 있으며, 정기조사 외에 납세협력의무를 의행하지 않거나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도 실시된다.

이렇듯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사관청에서는 사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며, 통지서에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세목, 조사기간 등이 관련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세무조사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심적 부담이 크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조사대리인을 조사에 입회하게 하는 등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납세자에게는 있다.

2.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얼마 전 유사한 조사를 연속으로 실시하여 억울함을 느낀 납세자가 이를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납

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중지명령을 요청하여 보호관에 의하여 세무조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외에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며, 불필요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 연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여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고충민원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였다. 흔히 조사기간 연장은 조사를 실시하는 과세관청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과세관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이런 사유의 조사기간 연장은 대폭 감소되었다.

3.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개념변화

반면에 재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여 납세자가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세자가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② 납세자가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증인 경우
-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연장에 한함)

- ③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③의3.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연장에 한함)
- ⑥ ①, ② 또는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도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을 하기 위해서도 납세자가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이 요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또한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일시중지권」을 실시,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 조사시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기피·거부하는 사업자에게는 그에 맞는 제재가 뒤따르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무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는 성실사업자들은 여러 제도들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문의 : (02)552-6100 대현회계법인